



# 쟁의행위 관련 제도 국제비교

## - 한국 vs. G5 -

SUMMARY

한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광범위하게 노조의 쟁의행위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용자 대응수단은 부족

	쟁의행위 대상	직장점거	대체근로	불법 쟁의행위 책임	특징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 - 투자결정, 업무외주화 등 경영사항 X	X	○	징계·민·형사상 책임 부과 (*영국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 있음. 노조원은 무제한)	사용자뿐 아니라 노조도 부당노동행위 규율
	노동관계 사항 중 사용자 처리권한 내에 있는 것 - 경영사항 중 근로조건 연관 시 예외적 허용	△ (부분·병존)	○		현실적으로 쟁의행위 자체가 거의 없음
	단체협약 상 규율 가능한 근로·경제적 조건 - 사업폐쇄, 사업변경 등 경영사항 X	X	○ (파견·근로자 금지)		재적조합원 75%이상 동의 등 쟁의행위 절차 엄격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민영화, 투자결정 등 경영사항 X	X	○		우편투표 의무화 등 쟁의행위 절차 엄격
	임금, 근로시간, 고용보장 등 직업적 요구 - 경영사항 중 고용과 연관 시 예외적 허용	X	○ (파견·기간 근로자금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법안 위헌 결정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 - 구조조정, 조직변경 등 경영사항 X	△ (부분·병존)	X		최근 노조 손해배상 책임 금지 법안 논의 중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고, 엄격한 민·형사책임을 부과



미국

불법 쟁의행위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엄격히 규율

<b>쟁의행위 대상</b>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 업무외주화, 투자결정 등 기타 경영사항은 쟁의행위 대상 X
<b>직장점거/대체근로</b>	❖ 금지 / ❖ 허용
<b>불법 쟁의행위 책임</b>	❖ 징계·민·형사상 책임 발생 <b>특징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율</b> 파업참여 강요, 파업 비참가자 출입 저지 등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美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b>금지명령처분</b> 가능. 노조가 이에 불응할 경우 <b>벌금·금고형</b> 적용

\*자료: 송강직, 미국의 단체행동의 정당성, 2012 / 노동법연구소 해밀, 노사관계 법·제도 외국 입법례 조사연구, 2019

**사례** 2005년 뉴욕 대중교통노조(TWA)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파업을 할 수 없다'는 뉴욕주법을 어기고 전면파업을 실시함. 뉴욕시는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노조를 대상으로 1일당 1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고, 뉴욕시가 승소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연금을 둘러싼 변화와 갈등: 뉴욕시 대중교통노조의 파업, 2006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파업 발생은 거의 없음



일본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 가능하나, 실제 파업 거의 없어 문제되지 않음

<b>쟁의행위 대상</b>	❖ 노동관계사항 중 사용자 처리 권한 내에 있는 것 - 생산방법, 경영방침 등 경영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경우(예. 구조조정) 예외적으로 쟁의행위 허용																										
<b>직장점거/대체근로</b>	❖ 부분적·병존적 점거 허용(단, 실제 파업 거의 없음) / ❖ 허용 [임금근로자 천명당 근로손실일수] <table border="1"> <thead> <tr> <th>년</th> <th>'10</th> <th>'11</th> <th>'12</th> <th>'13</th> <th>'14</th> <th>'15</th> <th>'16</th> <th>'17</th> <th>'18</th> <th>'19</th> <th>'20</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일</td> <td>0.4</td> <td>-</td> <td>0.1</td> <td>0.1</td> <td>0.4</td> <td>0.3</td> <td>0.1</td> <td>0.3</td> <td>0.0</td> <td>0.2</td> <td>0.0</td> <td>0.2</td> </tr> </tbody> </table>	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평균	일	0.4	-	0.1	0.1	0.4	0.3	0.1	0.3	0.0	0.2	0.0	0.2
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평균															
일	0.4	-	0.1	0.1	0.4	0.3	0.1	0.3	0.0	0.2	0.0	0.2															
<b>불법 쟁의행위 책임</b>	❖ 징계·민·형사상 책임 발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 및 일본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 정영훈, 일본에서의 불법파업과 법적책임, 2014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집단적 노사관계의 쟁점과 향후 과제, 2016



**사례**



2017년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레미콘지부가 운임인상 목적으로 전면파업을 벌임. 정부는 파업과 관련해 위력업무방해죄, 공갈미수죄 등 혐의로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89명을 체포하고 그 중 67명을 기소함

\*자료: 비즈니스와인권리소스센터, “関西生コン事件”, 2020

**경영권 대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도 엄격**



**독일**

경영권 대상  
쟁의행위 불가,  
쟁의행위 하려면  
재적조합원 75%  
찬성 필요

<b>쟁의행위 대상</b>	❖ 단체협약상 규율 가능한 <b>근로·경제조건</b> - 사업폐쇄, 사업정지, 투자결정 등 경영권은 쟁의행위 X
<b>쟁의행위 절차</b>	❖ 산별노조 규약 상 찬반투표는 재적조합원 <b>75%이상</b> 동의 필요, 1회 찬반투표는 여러차례 쟁의행위 근거로 활용 불가
<b>직장점거/대체근로</b>	❖ <b>금지</b> / ❖ <b>허용</b> (파견근로자 제외)
<b>불법 쟁의행위 책임</b>	❖ 징계·민·형사상 책임 발생

\*자료: 김기선, 독일에서의 쟁의행위를 둘러싼 법률문제, 2014  
노동법연구소 해밀, 노사관계 법·제도 외국 입법례 조사연구, 2019

**사례**



2012년 항공교통관제 연합노조(GDF)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파업을 벌임. 사용자 Fraport사(프랑크푸르트 공항서비스 회사)는 노동법원에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손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동법원은 이를 인정함

\*자료: taz, “Fraport gewinnt gegen vorfeldlotsen”, 2016

**불법 쟁의행위 시 민·형사 책임 발생. 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 有(노조원 제한 X)**



**영국**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이 있음  
(노조원은 무제한),  
우편투표 등  
쟁의행위 절차 엄격

<b>쟁의행위 대상</b>	❖ 임금, 근로시간, 해고, 징계 등 <b>근로조건</b> - 경영방침, 민영화, 투자결정 등 경영권은 쟁의행위 X
<b>쟁의행위 절차</b>	❖ 찬반투표 시 <b>우편투표</b> 방식, 사용자에게 투표일과 근로자 수 등 투표정보 <b>사전통보</b> , 쟁의행위 <b>6개월 지속 시 재투표</b> 실시
<b>직장점거/대체근로</b>	❖ <b>금지</b> / ❖ <b>허용</b>
<b>불법 쟁의행위 책임</b>	❖ 징계·민·형사상 책임 발생 <b>특징</b> ❖ <b>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 규정(노조원은 무제한)</b> 손해배상은 <b>개별 불법행위마다 별도 적용</b> 돼 복수의 불법행위인 경우 배상액이 수백만 파운드에 이를 수 있음 ❖ <b>파업개시일 12주 후 일정한 요건 下 해고 가능</b> ❖ <b>피케팅에 대한 상세한 금지규정(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b> 폭력·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제3자 거주지나 사업장 등 감시·포위하는 경우, 거리에서 2인 이상 무질서하게 제3자 따라다니는 경우 등

\*자료: 조경배,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영국법리, 2007  
이정,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입법의 한계(영국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 2022

**사례**



2022년 일반노조(GMB) 산하 공공폐기물 처리 서비스 노조원들은 임금인상 목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며 도로를 점거함. 이에 경찰은 “위법한 쟁의행위는 형법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경찰은 도로방해 범죄를 포함한 위반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노조원 3명을 도로방해 혐의로 체포함

\*자료: Bywire News, “Police are arresting trade unionists at strikes in the UK”, 2022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법안이 있었으나 위헌결정으로 폐지



프랑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법안이  
있었으나  
위헌결정으로 폐지

### 쟁의행위 대상

- ❖ 임금, 근로시간, 고용보장 등 **직업적 요구**
  - 구조조정, 근로자대표 해고반대 등 경영권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 고용과 관련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쟁의행위 가능

### 직장점거/대체근로

- ❖ **금지 / ❖ 허용**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불법 쟁의행위 책임

- ❖ 징계·민·형사상 책임 발생
- 특징** ❖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법안 위헌 결정**  
1982년 헌법위원회는 피해자 권리와 법적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

\*자료: 조몽만, 프랑스에서 파업권의 보호와 대체근로의 제한, 2018  
조임영, 프랑스에서의 파업권의 보장과 그 한계, 2014



사례

2016년 타이어 제조회사인 굿이어(Goodyear)사의 조합원 8명은 파업 중 폭력행사, 건물 훼손, 경영진 감금 등 범죄행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함

\*자료: 유럽노동조합연구소, strike in france background summary, 2016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음



한국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 허용,  
대체근로 금지 등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

### 쟁의행위 대상

-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
  - 구조조정, 조직변경 등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쟁의행위 X

### 직장점거/대체근로

- ❖ 부분적·병존적 **점거 허용 / ❖ 금지**

### 불법 쟁의행위 책임

- ❖ 징계·민·형사상 책임 발생
  - 다만, 현실적으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면제'**를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음
    - \*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철회 합의('22.09)
    - \* 참프레와 화물연대 간 손해배상 철회 요구 합의('22.07)
    - \* SPC와 화물연대 간 손해배상 청구 철회·면제 합의('21.10)

\*자료: 송강직,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2014  
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2022

### 참고.노조법 개정안

최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음. 그러나 이는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높으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으로 오히려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최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논란 有

### 쟁점과 체크포인트

-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 한국은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권한은 충분한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은 부족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규정 개정 필요

■ 내용문의: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02-3771-0480), 강지연 과장(0450)



#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 Inflation and Global Economy Growth Forecast

### 인플레이션과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Pierre-Olivier Gourinchas  
2022.10.17

#### SUMMARY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점을 찍으면서,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대비 0.5%p 하락한 2.7%로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치

국가	전망치('22년→'23년)	비고
미국	1.6% → 1.0%	긴축 재정 정책의 지속
중국	3.2% → 4.4%	부동산 악화, 봉쇄 정책 지속
유럽 <sup>주)</sup>	3.1% → 0.5%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식량난
세계	3.2% → 2.7%	2%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 25% 모든 악재가 실현될 경우, 1.1%로 하락할 가능성 10~15%

\*주) 유럽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통합 전망치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긴축 재정 정책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정 긴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 고착화, 지나칠 경우에는 경기침체 심화 우려

불확실성 증대로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상환능력 부재로 인한 부도 등을 겪지 않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늘릴 필요



<https://www.weforum.org/agenda/2022/10/global-economy-growth-forecast/>



## Labour squeeze: Is immigration the answer to widespread worker shortages?

### 노동력 부족: 이민 정책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John Letzing  
2022.10.24

#### SUMMARY

세계 각국은 장기 지속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제도 활성화 정책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유치 노력 중

\* 이민 제도 활성화 국가

**포르투갈** 건설·관광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비자 신설

**스페인, 독일**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민 규제 정책 완화

**캐나다** 향후 수년간 130만 명 이상의 영주권 지급

일부 국가는 이민 제도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 존재

**영국** 취업비자 발급 조건 보강 등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에 대한 규제 강화

**미국** 안보, 정체성 등을 명분으로 취업 비자 확대 정책 반대

이민 정책은 노동력 감소가 초래할 최악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자국 인구만으로는 노동 시장 고령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침체 극복과 재건을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



<https://www.weforum.org/agenda/2022/10/labour-immigration-worker-shortages/>